

報道資料

이 자료는 2000.6. 2(금) 조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題 目 :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에관한법률 입법예고

主要內容

- Workout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제도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
 -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
 -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가 설립됨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
-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는 ① 금융기관이 보유한 Workout 기업의 부실자산을 결집(Pooling)시켜 ② 자산운영을 자산관리회사(AMC)에 위탁 시키는 ③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임
 - Workout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Mutual Fund와는 다르고
 -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갖는 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회사 실체를 가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(CRC, 산업발전법)와는 차이가 있음

<법률안의 주요 내용>

-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: 금감위 등록
 -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Workout에 참여하는 다수 금융 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한시적 회사로 설립
 - 금융기관은 Workout 여신 또는 출자전환 주식을 현물 출자

□ 자산관리·보관·일반사무 업무의 위탁

-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,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운용전문기관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
 -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5억원등 일정 요건 갖추어 금감위에 등록
- 자산보관 및 일반사무업무는 채권금융기관중 동 업무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

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

- 금융기관이 보유한 ① Workout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의 매매 ② 금융기관이 Workout 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등의 매매 ③ Workout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④ Workout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 수행
 -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은 기업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게 되며 규모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 범위내로 제한
- 원활한 기업개선 작업 수행을 위해 자기자본 2배내에서 자금차입 및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 20배 내에서 사채(ABS 등)를 발행

□ 감독 및 회계처리상의 특례 등

- 금감위가 CRV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
-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상의 특례 인정
- CRV는 형식상 Workout 기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성격이 되므로 공정 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
 - 예외대상 : 부채비율(100%)제한, 자회사 주식을 50%이상으로 소유 하여야 하는 제한

報道資料生産課 : 證券制度課 (TEL: 500-5363~5)

財政經濟部 公報官室

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設立에 관한法律 要綱

2000. 6. 1

**金融政策局
證券制度課**

목 차

I. 제정 배경

II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개요

1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개념
2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구조

III 주요내용

1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
2. 구조조정투자회사의 내부기관
3.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용
4.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용
5.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
6. 결산 및 보고
7. 구조조정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
8.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출자한 주식·채권평가에 대한 특례등

I. 제정 배경

◇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제도를 도입

- 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

□ '98.7월 이후 일시적 유동성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,

- 워크아웃 여신을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

-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

* 2000. 5월 현재 76개 업체(대우계열 12개사 포함) 워크아웃 작업을 추진중이며 76개 업체 모두 기업개선약정(MOU)을 체결

□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처리과정에서 전문성 제고 및 의사결정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RV를 도입

-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금융기관에서 분리하여 CRV에 결집하고

- 결집된 자산을 전문 자산운용기관(AMC)이 관리하면서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작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

II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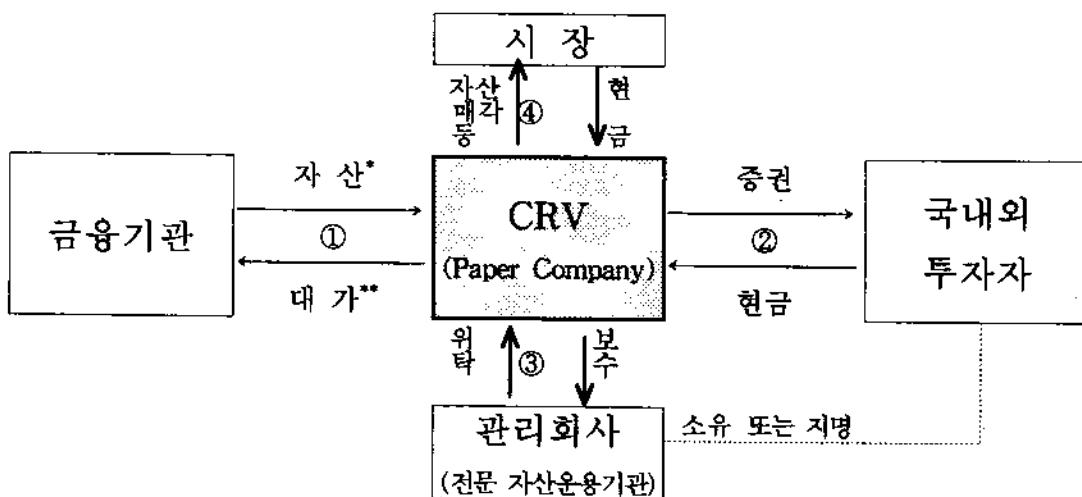
1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개념

- 기업구조조정회사(CRV)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전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
 - ①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CRV에 출자 또는 매각하여 부실자산을 분리하고
 - ② 분리된 부실자산은 전문성을 갖춘 구조조정전문기관이 운용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

2.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구조

- CRV는 ①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부실자산을 결집(Pooling)시켜 ② 자산운영을 자산관리회사(AMC)에 위탁하기 위한 ③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임

< CRV 구조 >



* 출자 전환된 주식, 대출채권, CB등

** 현금, 어음, CRV 주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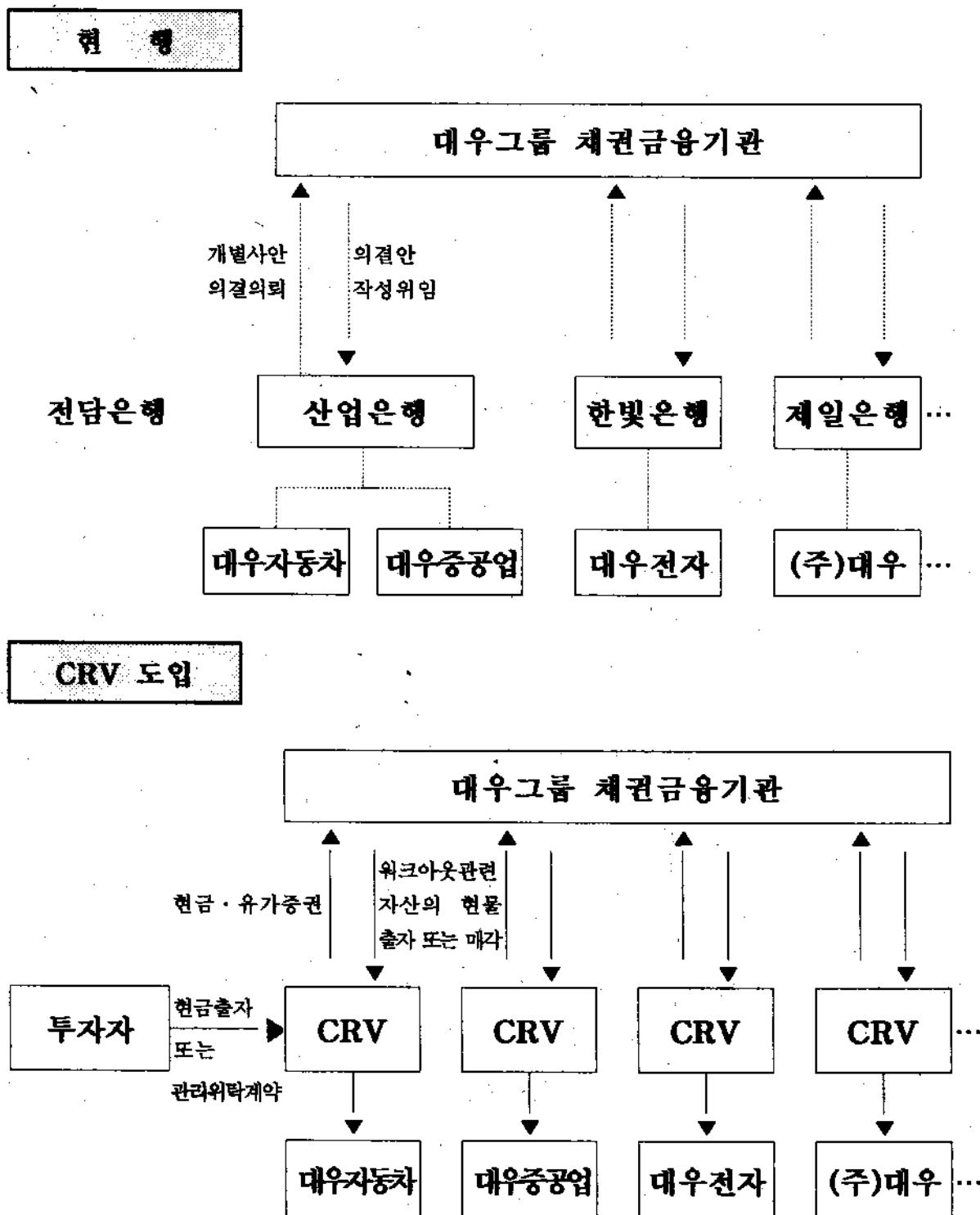
- CRV는 통상 워크아웃 기업마다 1개의 CRV가 설립되어 운용되는 한시적 성격의 Paper Company로서
 -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증권 투자회사법상의 일반적인 Mutual Fund와 구별됨

- 산업발전법상의 CRC는 ① Workout 기업의 부실채권등을 인수 하여 ② 경영 정상화를 달성한 후 이를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 하는 ③ 상법상 실체를 가진 주식회사인 점에서 CRV와 구별됨

<CRV와 CRC의 비교>

	CRV	CRC
도입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 제고 ○ 워크아웃기업의 경영 정상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 정상화
대상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워크아웃 기업만을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파산등 부실기업 ○ 구조조정이 필요한 모든 기업
설립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권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가 참여하는 Paper Company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법상 실체를 갖는 주식회사
운영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산운영은 전문 자산관리회사가 담당 ○ 자산보관등의 업무도 전문 회사가 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RC가 실체를 가지고 자산 운영, 자산보관 및 기타 구조 조정업무를 수행
업무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워크아웃기업의 유가증권매매 ○ 대출채권의 유동화 및 매매 ○ 금융기관의 예치 및 대출등 ⇒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금융측면의 지원 업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○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○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등 ⇒ 구조조정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등 각종지원 업무
운영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의 성격 ○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금융기관의 성격 ○ 영구적이고 비제한적 조직
감독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금감위의 감독이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자부가 감독

< 참고 > CRV도입에 따른 워크아웃 과정(예: 대우그룹)



* 현재는 CRV의 초보적 단계로서 「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의회」가 워크아웃 여신의 명시적 이관 없이 워크아웃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임 받아 추진하고 있음

III. 법안의 주요내용

1. 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설립 및 등록

□ 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성격

- 다수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와 합작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
-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않는 명목회사(Paper Company)
- CRV업무는 자산운용, 자산보관 및 일반사무를 각각 자산관리 회사, 자산보관회사,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함

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설립 및 등록 절차

-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한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주식회사 형태의 CRV를 설립하고 금감위에 등록
 - 등록요건 :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다수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하여 일정 기간만 존속하는 한시적인 회사로 설립
 - 등록시 첨부서류 : 정관 및 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등
-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여신 또는 출자전환주식을 CRV에 현물 출자
 - ※ 금융기관은 일부 워크아웃여신(출자전환 주식 포함)을 현물출자하고, 법인투자자는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CRV를 설립하고 설립 이후 금융기관은 잔여 워크아웃 여신을 CRV에 양도

□ 회사설립 사항에 대한 검사권한의 이관(법원 ⇒ 금감위)

-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기관이 소수이므로 회사 설립시 현물 출자에 따른 공정성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·보고, 공증인·감정인 조사·결과보고 등의 권한을 법원에서 금감위로 이관

□ 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되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음

2. 구조조정투자회사의 내부기관

□ 주주총회

-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,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 개별적으로 통지

□ 이사, 이사회 및 감사

① 이사

- CRV의 이사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

- 결격요건 : 파산자등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자, 위법행위로 인해 금고이상의 刑의 피선고자,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피선고자(선고후 5년 이내) 등

- 이사는 구조조정투자회사를 대표(정관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규정할 수 있음)

② 이사회

-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
 - 이사회 결의사항 : 업무위탁계약 및 변경계약, 자산 운용·보관에 따른 비용의 지급, 기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
-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영내역을 매 6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
- 이사회는 이사가 소집(회의 3일전 통지)

③ 감사

-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, 자격요건과 결격요건을 부여
 - 자격요건 :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
 - 결격요건 : 이사 결격요건 해당하는 자,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제한되는 자, 기업구조조정회사와의 특수관계인
- 감사에 대해서는 자산관리회사, 자산보관회사, 일반사무위탁회사에 대한 회계보고요구권등을 부여
- 감사는 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법령·정관 위반사항 또는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

3. 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업무 등

□ 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업무

-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등의 매매
-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등의 매매
-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범위 내에서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대여 및 자급보증
-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

□ 자금차입 등에 대한 특례 등

①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한도의 특례

- 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자금차입이 가능하고
- CRV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순자산액(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)의 20배내에서 사채를 발행

② 자산 양도에 따른 절차상 특례 인정

- 금융기관이 CRV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CRV에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수준으로 자산양도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여 자산 결집(Pooling)을 용이하게 함

※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감위 등록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(동법 제7조), 근저당권에 대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(동법 제7조의2), 등기 없이도 질권·저당권 취득 특례(동법 제8조)가 인정

③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제한

- 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해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및 자산 관리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여 건전한 자산운영을 도모

□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인정

- CRV가 대상기업의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CRV를 이용하여 계열확장 등에 이용할 소지가 없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 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
 - CRV에게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중 부채비율(100%이내), 자회사 출자비율(50% 이상) 예외를 인정

□ 금융기관의 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인정

- 현행 금융기관의 자회사 출자한도(은행), 재산운용제한(보험사), 투자제한(종금사) 규정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게 되어 자산결집을 제한할 수 있음
- 따라서, CRV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재산운영에 대한 특례 인정

4.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및 운용

□ 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관리,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위탁을 의무화

- 자산관리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
 - 등록요건 :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(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정할 예정)으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에 등록하여 설립

- 외국자산운영회사가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에 등록
 -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중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자산운용 업무를 수탁받아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

□ 자산관리회사 임원의 겸임 허용

-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의 상근 임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워크아웃 기업의 임직원의 겸임을 허용

□ 자산관리회사의 위탁받은 자산관리 및 운용 책임

-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의 관리, 운영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
- 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위탁받은 재산은 자산관리 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도록 함
- 자산관리 업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부여하고, 업무 소홀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규정
- 자산관리회사가 해산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총승인을 얻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타자산관리회사의 선정

□ 채권추심업의 허용

- 금융기관이 출자한 대출채권등의 자산에 대해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5.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

□ 자산보관업무의 위탁

- 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보관업무를 주총 승인을 얻어 채권금융기관중 신탁회사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
- 자산보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로 업무를 수행
 - 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 수행중에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금지
 - 수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유가증권의 증권예탁원 예탁의무 및 업무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여

□ 일반사무업무의 위탁

- 채권금융기관중에서 일반사무를 위탁할 회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, 자산보관회사와 동일하게 업무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

* 대상 사무 :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,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,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, 계산에 관한 사무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

6. 결산 및 보고

□ 결산서류의 작성 및 승인

-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서류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자산운용보고서)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감사에게 제출

-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주총 승인을 거친 후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

7. 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

- 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감위가 행사

- 금감위는 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등의 업무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행사할 수 있음
 - 금감원은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
 - 금감위는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법 및 관련 법령 위반시 등록 취소·업무정지·임원해임 요구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
- 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요건

- 해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, 등록요건 미달(공통),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(구조조정투자회사), 1년간 재무 건전성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, 6월 이내 영업을 개시(자산관리 회사)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
- 다만,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

- 구조조정투자회사의 해산사유 규정

- 존립시한 만료, 주주총회 의결, 합병, 파산,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산

8.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출자한 주식·채권평가에 대한 특례등

- 이 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구조조정 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-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및 채권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상의 특례 인정
- 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 하는 방법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되므로
 -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보유자로 지정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직접 자산을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함
- 이 법 시행은 「공포후 시행」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CRV가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함